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26-10

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안)

www.m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목 차

제1편 사업 안내 일반	1
I. 사업 안내 일반	3
1. 사업 안내 목적	3
2. 적용시기	3
3. 적용 대상 사업	3
제2편 제도 개요	5
I. 제도 개요	7
1. 장애인연금제도란?	7
2. 대상자	7
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9
4. 장애수당과의 관계	13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13
제3편 장애인연금제도의 의의	17
I. 도입 배경	19
II. 도입 의의	20

제4편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처리 방안 23

I.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처리 방안 25

- 1. 특례 적용 25
- 2. 특례 해당자 25
- 3.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7
- 4. 급여액 28
- 5.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자격 변동시 28
- 6.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에 대한 재조사 29
- 7. 업무 처리 절차 29

제5편 업무 처리 절차 31

I. 지급 신청 36

II. 초기 상담 · 신청서 등 작성 41

III.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44

IV.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59

V. 장애등급 심사 61

VI. 선정 및 지급 72

VII. 이의신청 77

VIII. 미지급 장애인연금 79

제6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81

I. 사후관리 83

II. 부당이득환수 94

III. 부정수급자 관리 99

제7편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안내 101

I. 경증장애수당 103
 II. 장애아동수당 105
 III. 지급일 108

제8편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109

I. 지체장애 111
 II. 뇌병변장애 112
 III. 시각장애 113
 IV. 청각장애 114
 V. 언어장애 115
 VI. 지적장애 116
 VII. 정신장애 117
 VIII. 자폐성장애 118
 IX. 신장장애 119
 X. 심장장애 120
 XI. 호흡기장애 121
 XII. 간장애 122
 XIII. 안면장애 123
 XIV. 장루·요루장애 124
 XV. 간질장애 125

제9편 서 식 127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29
 [별지 제1호의2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135
 [별지 제1호의3 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36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138

[별지 제7호 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142
[별지 제8호 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145
[별지 제10호 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150
[별지 제11호 서식]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151
[별지 제1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152
[별지 제13호 서식] 장애인연금관련 위임장	153
[별지 제14호 서식]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154
[별지 제15호 서식] 미지급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156
[별지 제16호 서식] 미지급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통지서	158
[별지 제17호 서식]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	159
[별지 제18호 서식]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160
[별지 제19호 서식]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	161
[별지 제20호 서식] 장애등급 결정서	162
[별지 제21호 서식]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163
[별지 제22호 서식] 중증 외상장애 확인서	164
[별지 제23호 서식]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165
[별지 제24호 서식] 장애인연금 장애등급 심사 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 ..	166

제 1 편

사업 안내 일반



- I. 사업 안내 일반
 - 1. 사업 안내 목적
 - 2. 적용 대상 사업
 - 3. 적용 시기

I 사업 안내 일반

1. 사업 안내 목적

- 장애인연금제도의 내용 및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여 장애인 당사자, 국민, 일선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적용 대상 사업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현행		→	개편
장애 수당	중증장애인 (월 13, 12만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 (월 3만원)		경증장애수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3. 적용 시기

- 2010년 5월 31일 : 장애인연금 사전 신청·접수시부터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하여 신청·접수
 - 신청일 당시 등록한 장애인에 한해, 등록한 장애등급 및 연령에 따라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하여 신청·접수
- 2010년 6월 1일 ~ 6월 31일 : 종전대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
- 2010년 7월 1일 이후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선정, 지급

제 2 편

제도 개요



I. 제도 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2. 대상자
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연금액
4. 장애수당과의 관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I 제도 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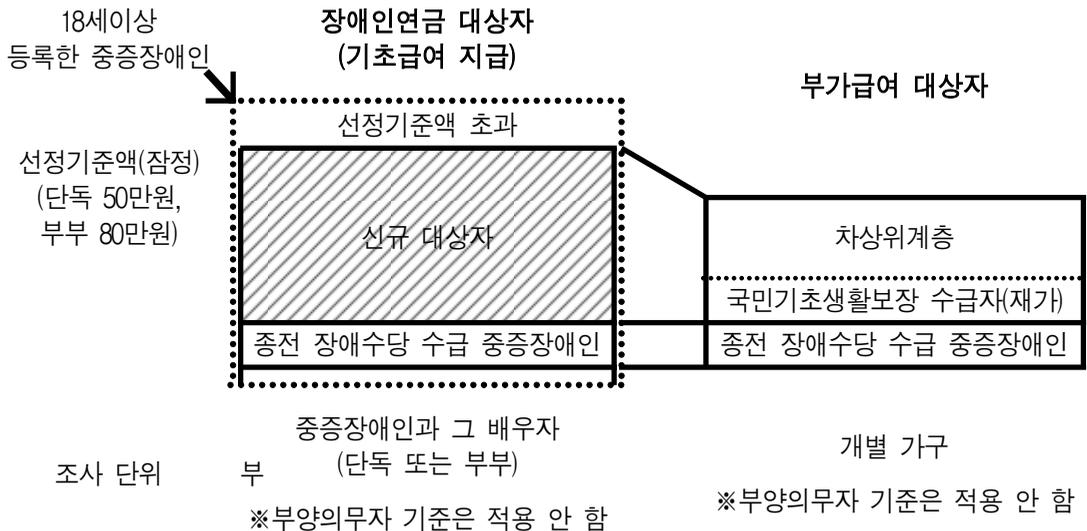
$$\begin{aligned}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연 5\%)} \\ &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div 12\text{개월} \\ &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 항목별 합계-상시근로소득 공제}) \end{aligned}$$

-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20만원
-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3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5천4백만원, 중소도시 3천4백만원, 농어촌 2천9백만원

- 선정기준액(잠정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부부 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선정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50만원	50만원	1억2천만원	80만원	80만원	1억9천2백만원

-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
- * 소득만 있는 경우와 재산만 있는 경우의 값은 상시근로소득공제, 금융재산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기 전의 금액에 해당



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가. 종류 및 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나. 기초급여(18~64세)

-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 2010.4월~2011.3월 : 9만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 A값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변동분 및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변경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7만2천원(9만원 x 0.8) 지급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geq 선정기준액
 -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geq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8만원 초과	6~8만원	4~6만원	2~4만원
기초급여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12만원 초과	8~12만원	4~8만원	4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42만원 미만	42만원 이상 ~44만원 미만	44만원 이상 ~46만원 미만	46만원 이상 ~48만원 미만	48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 ~76만원 미만	76만원 이상 ~78만원 미만	78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6만원 미만	76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모두 적용한 결과임

다. 부가급여(18세 이상)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일반 재가수급자에 한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부가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 65세 이상도 지급함

○ 지급액

구분	18~64세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6만원	15만원 ₁₎
차상위 계층	5만원	5만원(12만원 ₂₎)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5만원 지급

2) 2010년 7.1일 이전에 만 65세(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12만원 지급

3) 2010년 7.1일 이전에 만 65세(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된 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7만원 지급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이기 때문

라. 장애인연금 신규 대상자 (중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자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부부감액
장애인연금	_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18~64	9만원	7만2천원	X	6만원	
		65~	-	-	-	15만원	
장애인연금	_보장시설 수급자	18~64	9만원	7만2천원	X	-	
		65~	-	-	-	-	
장애인연금	_차상위 계층	18~64	최고 9만원	최고 7만2천원	O	5만원	
		65~	-	-	-	5만원	
장애인연금	_하위 60%	18~64	최고 9만원	최고 7만2천원	O	-	
		65~	-	-	-	-	

마.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 (중전 장애수당 수급자)

자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부부감액
장애인연금	_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18~64	9만원	7만2천원	X	6만원	
		65~	-	-	-	15만원	
장애인연금	_보장시설 수급자	18~64	9만원	7만2천원	X	-	
		65~	-	-	-	7만원	
장애인연금	_차상위 계층	18~64	9만원	7만2천원	X	5만원	
		65~	-	-	-	12만원	
(blank)		18~64	-	-	-	-	
		65~	-	-	-	-	

4. 장애수당과의 관계

현 행		→	개 편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월 13, 12만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 (월 3만원)		경증장애수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 현행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
 -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월 2만원)과 장애아동(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은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해당 금액 계속 수급
 - ※ 예시) 경증장애아동이 보장시설수급자로 월 2만원 지급받던 경우, 월 2만원을 장애아동수당으로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례
 -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급
 - ※ 다만,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는 2010년도 중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받아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선정기준액) 재조사
-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 가능
 - ※ 근거 :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

- 중증장애인의 매월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월 평균 21만원)을 고려, 추가생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

1.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초과분 감액 대상자

(만원)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2,000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1,520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1,040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10,560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10,08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600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120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8,640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160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7,68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7,200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6,720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6,240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5,760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5,28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4,800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4,320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3,840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3,360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2,88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2,400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1,920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1,440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960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48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재산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소득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3. 부부 가구 중 2인 수급시 소득인정액 및 초과분 감액 대상자

(만원)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32	136	140	144	148	152	156	160
19,200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32	136	140	144	148	152	156	160
18,240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32	136	140	144	148	152	156
17,280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32	136	140	144	148	152
16,320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32	136	140	144	148
15,3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32	136	140	144
14,400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32	136	140
13,440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32	136
12,480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32
11,520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0,56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9,600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8,640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116
7,680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112
6,720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108
5,76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104
4,800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100
3,840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2,880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1,920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6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재산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소득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제 3 편

장애인연금제도의 의의



- I. 도입 배경
- II. 도입 의의

I 도입 배경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
 - 경제활동참가율 17.4% (對 국민 60.4%), 고용률 15.1% (對 국민 58.4%)

< 참 고 > 장애인의 경제활동특성(2008)

구분 (단위 : %)	장애인			국민	65세 이상 노인
	1-6급 평균	1~2급	3~6급		
경제활동참가율	41.1	17.4	48.5	60.4	30.6
실업률	8.3	13.5	7.7	3.3	-
고용률	37.7	15.1	45.1	58.4	30.3

* 자료 :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39.5만원 對 58.4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매월 평균 21만원 추가 소요)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08)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 해소

☞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 소득보장 : 기초급여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성격)
- ▶ 추가지출비용 보전 : 부가급여

Ⅱ 도입 의의

①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 장애인연금(사회부조식 무기여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종 사회안전망)

-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②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역할을 구체화
 - * (장애수당) 제도로서의 성격·기능이 모호
-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 참 고 >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

	성격	발전 방향
기초급여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발전 * A값의 5% → A값의 10%(‘28년까지)
부가급여	추가 지출비용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지출비용(21만원)의 상당 수준 보전토록 점진적 인상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

③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
 - * (장애수당)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 결정

④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⑤ 권리성 강화

-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제 4 편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처리 방안



I.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처리 방안

1. 특례 적용
2. 특례 해당자
3.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급여액
5.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자격 변동시
6.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에 대한 재조사
7. 업무 처리 절차

I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처리 방안

1. 특례 적용

-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없이 7월부터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주기적(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0년 7월1일 자격 전환시에는 장애등급 심사를 하지 않고, 향후 재판정 시기에 도래할 경우(2010년 7월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는 실시함

2. 특례 해당자

- 2010년도 6월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중 2010.6.30일까지 장애수당 수급 자격의 변동(사망, 보장시설 퇴소, 소득인정액 변경 등)이 없는 자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새로이 포함되는 종전 경증장애수당 수급자로서 2010.6.30일까지 자격 변동이 없는 자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종전 장애수당) 3급의 지적, 자폐성 장애로 중복 장애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3급의 장애로서 중복 장애(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 2010년도 6월까지 경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수당을 받던 자도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대상에 포함
 - * 2010년 7월 1일 자격 전환시에는 장애등급 심사 실시하지 않음

- 65세 이상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 되는 범위
 - (특례 부가급여 지급) 차상위인 경우 부가급여 12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부가급여 7만원 지급
 - * 종전 장애수당 지급액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한 경과 조치로, 신규로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하거나 2010.7.1일 이후 종전 장애수당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급여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예시) 65세 이상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 2010년도 중에 실시할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자산조사를 다시 하여 차상위에서 제외될 경우 종전의 부가급여 특례 금액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함
 - 예시) 65세 이상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 2010.7.1일 이후에 보장시설을 퇴소한 후 재입소한 경우 더 이상 보장시설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포함되는 자) 2010년 6월 30일까지 만 65세가 되는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인 다음의 자
 - 2010년도 6월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중 2010.6.30일까지 장애수당 수급 자격의 변동(사망, 보장시설 퇴소, 소득인정액 변경 등)이 없는 자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아동이 2010년 6월30일까지 만 18세(1992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자가 아닌 경우
 - 법 시행일인 2010.7.1일에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임
 - * 장애인복지사업안내상 만 18세가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을 지급하므로 2010년도 6월까지의 장애아동수당, 2010년도 7월부터는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아동이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새로이 포함되고, 6월30일까지 만 18세(1992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자가 아닌 경우

3.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 중증장애아동이 2010.7.1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실시

- 2010.6월30일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장애아동이 2010.7.1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 (1992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실시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만 18세가 되기 전의 3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신청하도록 안내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는 만 18세 미만인 중증장애 아동 (1992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
 -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7만원(종전 보장시설 장애수당 지급액)을 지급

4. 급여액

- 기초급여액(18~64세) : 최고 9만원
 - (부부급여)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80%인 7만2천원 각각 지급
 - (초과분 급여) 적용하지 않음
 - (65세 이상)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지급, 그 다음달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 부가급여액(18세 이상) : 5~15만원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6만원	15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12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7만원

* 65세 기준 : 2010.6.30일까지 만 65세가 되는 자임 (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

5.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자격 변동시

- 2010년도 6월30일까지 자격 변동시 : 2010년도 6월30일까지 장애수당 자격 기준 해당 여부 조사하여 반영, 결정
 - 인적사항 변동 : 사망, 전·출입, 가구원 변경
 - 보장시설 퇴소
 - 소득인정액의 변동

- 2010.7.1일 이후 자격 변동시 : 특례 자격에서 영구 탈락
 - 애인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 심사(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6.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에 대한 재조사

- 2010년도 중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받아, 장애인 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해당 여부에 대해 재조사(자산조사)

7. 업무 처리 절차

-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장애수당 수급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을 받을 필요 없으며, 별도의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법에 의해 자격이 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당연 전환되기 때문에 자격 전환을 위한 별도 결재를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행복e음에서 2010.7.1일을 기점으로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자격을 확인하여 변동해야 함 (시군구 사업과)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자격도 동시에 확인하여 변동해야 함
-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사실, 급여액, 2010년 7월 지급일 변경(7월은 30일)에 대해 사전 안내·통보 필요(시군구 사업과 → 대상자)
 - * 지급일 변경에 대해 민원 발생 없도록 안내 철저 (제도 시행 첫 달에는 지급일을 다소 늦추어 7월에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 참 고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의 자격 변동 처리 절차

* 기준 시점 : 2010년도 6월 30일

단계	내용	확인 · 처리 내용
제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연령 변경 반영 - 소득인정액 변경 반영 - 보장시설 입 · 퇴소 반영 - 전 · 출입 변경 반영
제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 확정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모두 확인하여 확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추가로 중증장애인이 되는 자 확인하여 반영 * 3급 중복장애인
제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확정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0세의 자는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재학(휴학) 여부 확인
제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대상자,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로 변경 	
제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급여액 확정 - 부부 모두 대상자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 65세 이상 차상위인 경우 특례 부가급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정보 확인 ·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제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지급액 확인 	

제 5 편

업무 처리 절차



- I. 지급신청
- II. 초기 상담·신청서 등 작성
- III.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 IV.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 V. 장애등급 심사
- VI. 선정 및 지급
- VII. 이의신청
- VIII. 미지급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신청·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확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 1단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제출**
 - (신청서) 신청서[3면]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한 후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아 「행복e음」 조회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항목 중 공적자료 자동반영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기재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스캐닝 입력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 서명을 받아 제출
- **장애등급 심사 대상 여부 확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안내**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면제자, 유예자 여부 확인하여 행복e음에 입력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가 될 수 있는 1급의 뇌병변 또는 1급의 지체장애인 중 척수(경추)손상으로 와상 상태임을 주장할 경우 : 관할 보건소에 확인 공문 요청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을 설명,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를 반드시 설명, 출력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료기관 협조 안내문)을 함께 출력하여 교부
 -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는 자산조사 결과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안내
-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등록, 신청일 확정**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신청 접수일로 봄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중 관할 보건소의 와상 상태 확인이 필요한 자는 해당 중증 와상상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신청 접수일로 봄

제 2단계

자산 조사 : 공적자료 + 금융재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통합조사관리팀)

-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 확인 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 신고된 사항과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결과 등을 적용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 대상자 기준 적합여부 결정**

제 3단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 조회 및 장애등급 심사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심사 면제자 및 유예자는 적용하지 않음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중 **장애등급 심사 실시자 조회**
 - 5.31~6.30 : 금융재산 제외한 공적자료 조회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40만원 이하, 부부 64만원 이하인 자
 - ※ 단독 40만원, 부부 64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금융재산 조회 후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50만원, 부부 80만원 이하인 경우
 - 7.1일 이후 : 금융재산과 공적자료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50만원 이하, 부부 80만원 이하인 자
- 장애등급 심사 실시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자산조사 결과 안내,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요청**
 - 안내일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별지 제19호 서식) 안내
 - 미제출시, 각각 15일의 기한을 두어 2회 추가 요청, 그 요청 후에도 미제출시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 ※ 신청 각하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해당 사업과
- 장애등급 구비서류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통지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
 - 장애등급 결정서(별지 서식 제20호)를 신청인에게 통지

장애인연금 수급자 결정 · 통보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사업과)

제 4단계

- **장애인연금 수급자 결정 및 급여액 결정**
 - 자산 조사 결과 및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급여액 결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희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SMS로 통보)
 -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의 지급결정 여부 확인

장애인연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사업과)

제 5단계

- 전자결재-지방재정시스템 연계 후 금융결제원(또는 시 · 도 금고)에 입금 의뢰
- 지급일 : 매월 20일 ※ 2010년 7월은 30일 지급

이의 신청

- 대상 : 장애인연금 자격 인정, 장애등급 심사 결정 및 그 밖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기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기관
 -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결정 · 통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I 지급 신청

1. 신청권자

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 ①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그 달의 말일 기준)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 18~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경우 신청 가능
 - 65세 이상(신청월의 말일 기준)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 가능
 -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시 부가급여 지급하기 때문임
 - * 법 시행일(7.1일) 이전인 사전 신청·접수기간에는 만 64세이나 7월31일까지 만 65세가 되는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 가능
- ②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 안 됨
 -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연금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도 안 됨

③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
- 다만, 예컨대 4급의 등록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2급의 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 2급으로 등급 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3급의 등록 장애인이 4~6급의 장애등급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추가로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해당 장애 유형 등록이 정해진 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대리인

- (대리인 자격)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 관계 공무원은 대리인이 아니라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 * 배우자의 대리 신청시에도 위임장 필요
 - * 신청·접수를 받는 담당 공무원은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에게 신청 위임 여부 및 대리권자 등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 실시

다.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 (직권 신청 대상자) 거동 불편 또는 심신 박약으로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
- (동의) 중증장애인의 지급 신청에 대한 동의 필요
 - * 동의를 한 날짜가 신청일에 해당함

라. 신청 자격이 없는 자

- 행방 불명자
 - 실종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후 1개월 경과자로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첨부
- 실종자 : 법원의 신고를 받은 자
- 해외체류 180일 이상인 자
- 국적상실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
 -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 다만, 집행 유예 중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에 유의

2. 신청시 구비 서류

가.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은 가능. 이 경우 증빙 서류 제출 필수적임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 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 ① 중증장애인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② 중증장애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③ 중증장애인이 치매인 경우
- ④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
- ⑤ 중증장애인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장애인연금 선정 및 지급」 참조

나. 추가 제출 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시)

-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재산 확인 : 전·월세 임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 부채 확인 :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다. 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

- (1)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 제8편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참조
- (2)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5편의 5. 장애등급 심사편 참조

3.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기관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나, 주민등록지(보장기관)가 서로 다를 경우
 - 최초 신청 받은 보장기관에서 부부 모두의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실시하여 자격 결정 후, 나머지 1인의 보장기관으로 결정 결과 이관(문서로 통지)
 -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보장기관에서 지급

Ⅱ 초기 상담 · 신청서 등 작성

1. 초기 상담 및 안내

- 신청 자격 안내 및 확인
 - 연령, 장애등록 여부 및 장애등급, 선정기준액 안내
 - 배우자 유무(사실혼, 사실이혼) 확인
 -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임) 소유(전·월세는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지 여부 확인
- 장애등급 심사 실시 안내
 - 장애등급 심사의 필요성
 - 장애유형별 장애 등급 심사 구비 서류 및 제출 시기
 - * 구비 서류 미비시 장애 등급 심사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설명하고,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제7편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 * 별지 제24호의 서식(의료기관 협조안내문)을 출력, 교부하여 신청인이 의료기관 방문시 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
 -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전 확인 후 안내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완료 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소득재산 등 성실 신고 안내
 - 행복e음을 통해 각종 공적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재산이 전산 조회됨을 안내 하여 신청 후 장애인연금 대상 자격 탈락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

2. 신청서 등 작성 및 유의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항목 작성·입력
 - * 중증장애인의 특성 감안하여 작성 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토록 조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 스캐닝 입력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자필 서명, 무인(지장), 인감 날인
 - 금융정보조회사실 통보 요구 여부 확인
-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후에 지급 결정됨을 안내
 - 처리기한이 30~60일 이상 소요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되,
 - 장애등급 심사 지연으로 장애인연금 자격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장애인연금 신청일로부터 장애인연금이 소급 지급됨을 반드시 안내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 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를 동시에 신청·접수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미해당시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임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보장의 자산기준에 대한 조사 실시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해당시 장애인연금 자산기준 자격은 당연 부여(다만, 장애등급 심사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부가급여 지급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미해당시,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해당여부 조사하여 기준 해당시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하고,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해당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부가급여 지급 결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 초기 상담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과 유사할 경우에 『차상위 부가급여』 도 함께 신청
- 특히, 65세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초기 상담되는 경우에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부가급여를 지급하므로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자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초기 상담되는 경우에 신청·접수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후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 장애등록일에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장애인연금의 자격과 부가급여 자격 당연 부여

Ⅲ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 조사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배우자의 범위 : 장애인일 필요는 없음
 - 연령 무관(18세 미만, 65세 이상도 포함)
 - 국적 무관(외국 국적인 배우자의 소득·국내 소재 재산 포함)
 - 법적혼 무관(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 동거여부 무관(해외체류, 가출·행방불명, 교도소 수감자 포함)
 - * 해외체류,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자인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어려우므로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begin{aligned} & \left. \begin{array}{l} \\ \\ \end{array} \right\} = (\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연 5\%)} \\ & \qquad \qquad \qquad \div 12\text{개월} \\ & \left. \begin{array}{l} \\ \\ \end{array} \right\} = (\text{소득 항목별 합계} - \text{상시근로소득 공제}) \end{aligned}$$

-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20만원
-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3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5천4백만원, 중소도시 3천4백만원, 농어촌 2천9백만원

3. 소득 조사

가. 소득평가액

- (정의) 각종 소득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계
- (기준 시점)
 - (근로소득) 신청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신청월 전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월액
 - (자활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소득액
 - (사업소득) 연 평균 소득액의 월액

나.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급여, 국외근로 급여는 포함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소득 : 장애인복지일자리, 자활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소득은 제외
 - 다만, 정규직 일자리에 가까운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포함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20만원(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적용)의 상시근로소득은 공제
 -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평균 임금 수준에 가까움

다.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의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반영 (행복e음 조회)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농업, 어업, 임업소득은 제외

라. 재산소득

- 재산소득의 범위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각종 권리의 대여로 받는 소득
 -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 적용
- 이자소득 : 국세청 이자소득 적용(행복e음 조회)
- 연금소득 : 은행법, 보험업법에 따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마. 공적이전소득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
 - 장애인올림픽연금
-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소년소녀

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급여
- 국가보훈처 지급 보상금 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부가급여액 최고액 (1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 기타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노동부의 직업훈련수당,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 보조금
- 지자체에서 조례 등에 의해 지원하는 각종급여 : 이·통장 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복지·보훈 대상자 추가지원금
-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

○ 적용 방법 : 행복e음 조회 결과 자동 반영

바. 사적이전소득

- 취지 :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 금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수준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 포함되는 소득 : 무료 임차소득과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모두 산정
- 확인방법
 -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확인하여 행복e음에 입력
 - 신청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별지 제23호 서식)받아 보관
 - * 신청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 받지 않음
 - * 중증장애인 배우자의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1촌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인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1인의 1촌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 무료 임차소득(추정) :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여 얻는 수익을 추정하여 소득으로 산정

- 대상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공시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 공시지가 3억원은 수도권 공동주택가격 중위값의 150%에 해당(국토해양부의 '09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 제외되는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무료임차소득으로 추정되는 소득 산정

- 구간별 주택가격 x 연 소득환산율 ÷ 12개월

구간	주택가격	소득환산율	예시
1구간	3억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연 0.39%	3억원인 경우 월 9.7만원
2구간	4억 5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연 0.52%	4.5억원인 경우 월 19.5만원
3구간	6억원 이상	연 0.78%	6억원인 경우 월 30만원

- 확인방법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의 주택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인지 여부와 그 주택의 공시 가격 확인

-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방식에 따라 무료임차소득 산정

-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소유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함

* 소유 주택이 공동 지분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지분율만큼의 가격만 반영

(2)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추정)

○ 대상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월 156천원, 지역가입자 월 176천원 이상인 경우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임(가구소득이 월 587만원 이상)
 - * 중증장애인의 배우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조사 대상이 아님
 - *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주 신청인 1인만 조사
 -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안 됨

○ 산정 방식 : 중증장애인이 기본의식주 비용으로 지원받는 소득 추정

구분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양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56천원이상 188천원 미만	188천원이상 209천원 미만	209천원 이상	176천원이상 196천원 미만	196천원이상 211천원 이하	211천원 이상
①월 건강보험료 확인						
②소득구간 확인	150%	180%	200%	150%	180%	200%
③소득구간별 월 평균소득 확인	587만원	704만원	783만원	587만원	704만원	783만원
④기본의식주 지원소득 산정액 (③ X 5.3%)	310천원	374천원	415천원	310천원	374천원	415천원

○ 산정원리 : 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구간별 월 평균소득에 기본의식주 비용에 해당하는 5.3%*를 곱하여 산출

- * 소득8분위 가구의 기본의식주 지출비용(4인 가구 기준)은 소득의 21%이며, 이 중 1인당 기본의식주 지출비용이 소득의 5.3%에 해당
- * 출처 : 통계청 '09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8분위별 지출비목 구성 비율

예시)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16만원 인 경우, 해당 소득 구간은 150%구간, 해당 구간의 월 평균 소득은 587만원, 이 소득에 .5.3%를 곱하여 월 31만원을 기본의식주 지원소득으로 산정

○ 확인방법

-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납부하는 월 건강보험료를 확인
- 직장 가입자인 경우 월 156천원 이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월 176천원 이상 일 때 가장 건강보험료가 높은 1인의 월 건강보험료를 입력
- 산정방식에 따라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산정
 - * 다만, 해당하는 자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부양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건강보험증으로 확인 가능)에는 그 가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4. 재산조사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정의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 5%
- 기본재산액(주거공제)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

구분	공제액(만원)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5,400
중소도시 (도의 '시')	3,400
농어촌 (도의 '군')	2,900

- 신청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제금액 차감
 - * 일반재산에서만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 및 금융재산(별도 300만원의 공제 금액 적용함)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음
 -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으로 적용
 - * 부부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기준으로 적용

사례) 남편 갑(甲)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구지역(즉,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6천만원 아파트에 소유 및 거주하고, 부인 을(乙)은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순천시(즉, 중소도시)에서 부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8천만원 주택에 거주할 경우

- ☞ 해당 물건의 재산가액이 높은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상위도시 기준으로 공제 적용(즉, 대도시 거주하는 남편 기준)

나. 일반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 :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적용
 - * 각종 회원권 : 골프장회원권,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포함
- 선박, 항공기 :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임차보증금 : 계약서상의 금액 x 0.95
 -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기 설정한 임대차계약서 개별 징구, 확인, 적용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가액 입증자료 개별 징구하여 확인, 적용
 -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 평가액 ± 청산금
 - (분양권) 불입금 총액(계약금 + 중도금 등)

다. 금융재산

(1) 명의인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판결 받은 경우를 제외한 차명·도명 주장 계좌는 불인정

(2)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평잔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연금 개시 전) : 잔액
-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가능한 금액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른 용도로 사용시 기타(증여)재산과 동일 방식으로 처리 산정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3) 재산 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 일상생활 유지위한 필수 자금 성격의 금융재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배우자의 유무 및 수급에 관계없이 '가구' 기준으로 300만원 공제

(4) 조회기준일, 조회기준금액

- 조회기준일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별 기준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계좌

(5) 조회 결과 적용

- 당초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
 - * 금융조회 결과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금융재산 해지 유인 최소화
 - 다만, 금융재산 감소가 타 재산 증가 또는 부채상환의 경우는 6개월 전이라도 변경 가능
 - 이 경우 6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2차 금융조회를 실시
- 금융재산을 인출하여 주택 등 일반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과 일반 재산이 중복 산정된 때에는 금융재산에서 중복분 차감 처리
 - 금융재산 감소와 일반재산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통장 입출내역, 주택

구입가액, 등기부등본 일자 및 권리 변동 관계)에만 적용

- 금융과 일반재산이 중복 산정된 경우 주택 등 구입으로 금융재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금융재산 감액 처리
- 요구불예금 계좌를 타 계좌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중복 부분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각 계좌에서 동일 금액의 입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계좌의 잔액의 합을 재산으로 산정(중복 계산된 금액 차감)
-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및 금융재산이 감소된 경우 ‘기타(증여)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처리

라. 자동차

-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적용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없음 : 1~6급 장애인 보유 자동차도 전부 포함
 -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간 소득·재산 수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 우대는 어려움

마. 기타 산정되는 재산

- (목적) 기 산정된 재산의 고의적인 축소·은닉 방지
- (기본방향) 기 산정된 재산의 처분시(증여, 금융재산의 감소) 처분한 재산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처분된 재산으로 적용

$$\text{기타(증여)재산 가액} = (\text{처분한 재산 가액} - (\text{타 재산 증가분} + \text{본인소비분}) - \text{자연적 소비금액})$$

- (타재산 증가분) 타재산 구입으로 증가한 재산가액, 부채 상환액(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한정)
- (본인소비분) 의료비, 교육비, 이혼위자료, 법원 경매 또는 공매된 재산,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
- (자연적 소비금액) 중증장애인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바. 부채

(1) 용도(의료비, 학비, 주거비 등) 무관

- 다만, 개인간 사채는 불인정

(2) 산정기준 및 방식

- (금융기관 대출금)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및 용도 관계 없이 인정, 금융정보조회결과 적용
 -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대금)

- 대출금의 이자 상환금, 기업대출, 한도대출은 불인정
- (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부 임대보증금만 인정
 - (전세권 설정) 공시가격의 50% 한도내 인정
 - 한도 범위내에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등기부등본 상 전세 권 설정금액 확인·적용
 - (확정일자부) 공시가격의 50% 한도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인정
 - 한도 범위내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징구하여 임대보증금 확인·적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가능 임차보증금의 범위(최대 6천만원) 반영
 - (일부를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 전전세금)
 - 원 주택 소유자 : 공시가의 50% 범위 내 최고 6천만원
 - 2차 임대자 : 본인 임차 물건의 임차보증금 기준 50% 범위 내 최대 6천만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부채는 인정
 - 국가보훈처 대출금(보훈처 직접 대부금, 국민은행 대부금)
 - 법원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된 사채
-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연대 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주 채무자만 인정)
 - 물건에 설정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
 -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
 -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1년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5.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가. 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 결과값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시

- 해당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 수정토록 요청
-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 결과 반영

나. 행복e음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자료 제출

IV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 부가급여 대상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 차상위계층

2. 가구의 범위

-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동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가구 범위 적용, 가구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

3. 소득인정액

-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동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조사방식 적용
 - 다만,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조회의 법적 근거가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것만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최저생계비의 120%	605,12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5	2,240,922

※ 차상위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V 장애등급 심사

1.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2. 목적

-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 등급 판정 부여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 제공”

- ▶ 최근, 복지프로그램의 실효성 향상위해 **전달 체계의 중요성이 대두**
 - 특히, 장애인서비스 진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의 확대**와 함께 수급 자격의 적정성 확보가 제도 확대·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필요
- ▶ 그간, **중증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한 위탁 재심사**, ‘허위·부정 장애등록’ 언론 보도 등으로, 장애 판정·등록 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속 제기
 -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07.4) ‘**중증 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한 **장애 등급심사 결과, 32%의 등급 하향** 발생
 -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의사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통한 **부정 등록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
- ▶ 장애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장애등록제도의 정립**이 장애인복지 확대에 앞서 **선행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3. 적용 범위

(1) 적용 대상 사업과 적용 시기

- 2010년 5월 31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시 적용

(2) 적용 제외 대상 사업

☞ 동 사업안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적용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1~3급 신규 등록 신청시에 실시하는 장애 등급 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실시하는 장애등급 심사는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중증장애수당 위탁심사 지침을 적용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장애유형별 의무적(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조정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장애등급 심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예시) 4급 등록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2급 장애인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장애등급 심사시에는 동 사업안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제도 방안을 적용함

4.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5.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1) 원칙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등록된 중증장애인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 * 2007.4.1일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를 하였던 종전 장애수당과 다름

(2) 예외 : 장애인연금 신청시의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및 심사 유예자

(가)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 ☞ (확인 방법)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으며,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
- 주의 : 다만, 2010년도에 장애 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신청시 의무적 재판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 * 예시) 2010년 12월이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 시기인 자가 2010년 6월에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장애등급 심사를 하고, 12월에는 별도의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지 아니함
- 1급 뇌병변장애인 또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척수(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외상 중인 자가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받은 자
 - ☞ (확인 방법) 신청인(대리인)이 신청시 해당함을 주장할 경우, 1급 뇌병변장애인 및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척수(경추)손상인지를 행복e음으로 확인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관할 보건소에 공문으로 중증 외상장애 확인(별지 제22호 서식)을 요청 → 보건소 확인 공문에 따라 해당 여부 최종 결정
 - * 보건소 확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안내

※ 관할 보건(지)소에 중증 외상장애 상태 확인 요청 공문 예시

수신자 ()보건(지)소장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외상상태 확인 요청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자로서 장애 상태가 1급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외상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귀 보건(지)소에 다음사항의 확인을 의뢰하오니 대상자에 대한 「중증 외상장애 확인서」를 . .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 취지 : 1급의 뇌병변 장애인 또는 1급의 지체장애로서 척수(경추)손상인 장애인이 사지마비로 외상 상태임을 주장하는 경우 보건(지)소의 중증 외상장애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를 면제함
- 확인사항 : 대상자가 중증 뇌병변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하루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외상의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
- 확인방법 : 보건(지)소 소속의 의사 또는 간호가가 대아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인 관찰, 장애인 및 보호자와 상담 등을 통해 붙임의 「중증 외상장애 확인서」 작성

붙임 : 중증 외상장애 확인서 서식 1부. 끝.

(나) 장애등급 심사 유예자

- 장애 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로 '11.1.1 이후에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신청 시점에 장애등급 심사를 하지 않고, 2011년도 중 의무적 재판정주기가 도래한 시점에 장애등급을 심사함
 - 2009년도에 장애등급이 결정된 정신, 심장 장애인
 - 2008년 이후 장애등급이 결정된 간질, 장루·요루 장애인
 - 기타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장애진단서에 '11.1.1이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기재된 장애인
 - * 의료기관에서 3회 이상 같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 그 과정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대상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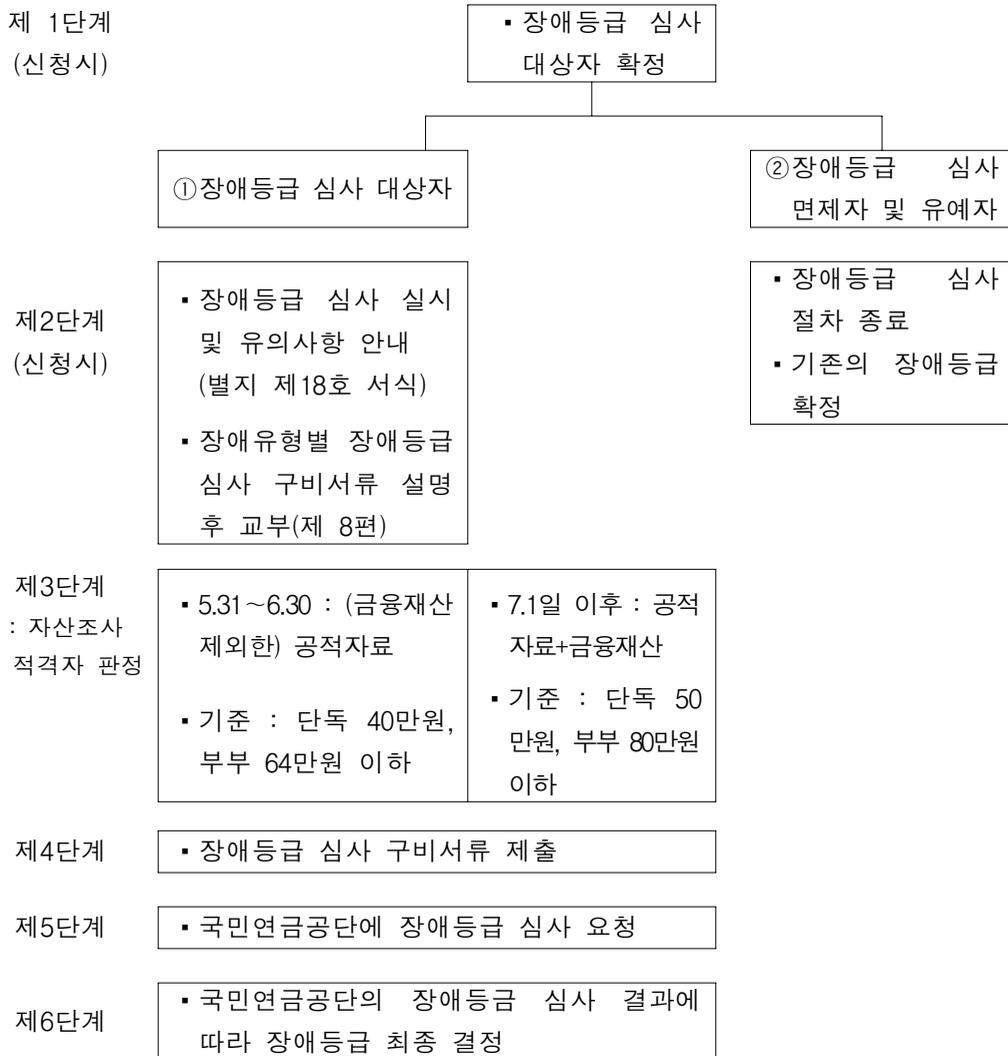
☞ (확인 방법) 증빙서류 제출 없이 행복e음으로 확인

☞ 유의 사항

-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일 경우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에 도래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재판정은 실시함
-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가 주기적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어 실시한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함

구분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장애등급 심사 유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심사 면제자와 유예자가 아닌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②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 자 ③ 만 65세인 자 ④ 1급 뇌병변장애 또는 1급 지체장애로서 척수(경추)손상장애인이 외상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로서 재판정시기가 2011년 이후인 다음의 자 ⑤ '09년도에 장애등급이 결정된 정신, 심장 장애인 ⑥ '08년 이후 장애등급이 결정된 간질, 장루·요루 장애인 ⑤ 장애인단서에 '11.1.1이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기재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③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행복e음으로 연령, 등급, 장애유형 확인 ④ : 신청인 주장시, 관할 보건소에 중증외상장애 확인 요청 * 보건소에서 부적격 판정 받은 경우 장애등급 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⑥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행복e음으로 장애등급, 장애유형, 재판정 시기 확인 ⑤ : 장애인단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 심사로 장애등급 최종 결정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 자산조사 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장애 등급 적용 자산조사로 장애인연금 자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장애 등급 적용 '11년도 이후 재판정 시기에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함 자산조사로 장애인연금 자격 결정

6. 절차



(1) 제 1단계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심사 면제자 및 유예자 확정

○ 시기 : 장애인연금 신청시

- 관할 보건(지)소 확인이 필요한 자는 보건(지)소에 중증 외상장애 확인 요청 후 보건(지)소의 회신 공문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 면제 여부 최종 결정

-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및 유예자 : 장애인연금 신청시에는 장애등급 심사하지 않고 기존의 장애등급을 적용함

(2) 제2단계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등

- 대상자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 시기 : 장애인연금 신청시
 -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한 자는 보건소의 중증 외상장애 확인 공문 후 그 결과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 면제 여부 최종 결정 후
- 내용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별지 제18호 서식)하고, 확인증에 서명을 받아 제출받아, 사본은 교부하고 원본을 보관토록 함 (절취하지 말고,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토록 함)
 - * 장애등급 심사로 지금의 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며 동시에 장애 등급 하락시 장애등급과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안내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세부 구비서류 설명 후 출력하여 교부
 - * 제 8편 참조
 -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제출 기한은 자산조사 후에 자산조사 결과를 안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임
 - * 다만, 중증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제출을 원할 경우 접수받아 장애등급 심사 진행
-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3) 제3단계 : 자산조사로 장애등급 심사 실시 여부 판정

- 필요성 : 자산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장애 등급 심사를 실시하지 않기 위함
- 대상자
 - 5월 31일 ~ 6월 30일 : 금융재산을 제외한 공적자료 조사 결과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40만원, 부부 64만원 이하인 자
 - * 단독 40만원, 부부 64만원을 초과한 자는 금융재산 조회 후의 소득인정액 값이 단독 50만원, 부부 80만원 이하인 경우

▶ 5.31~6.30동안 장애등급 심사 실시 여부 조회 기준

- 기준 : [선정기준액 - (금융재산 제외한) 소득인정액] ≥ 단독 10만원, 부부 16만원
- *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0만원, 부부가구 16만원은 소득 환산 전의 금융재산 가액으로는 단독가구 2천4백만원, 부부가구 3천8백4십만원에 해당
- * 18~64세의 중증장애인과 소득·재산 분포가 유사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받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평균 금융재산 가액은 1인당 1천5백만원임

- 7월 1일 이후 : 공적자료 +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단독 50만원, 부부 80만원)

- 방법
 - 행복e음 알림기능으로 자산 기준 적격가능자 명단 제공(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과 읍면동 담당자 모두)
 - 읍면동 담당자는 적격가능자에 한해 자산조사 결과 안내하고,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요청(별지 제19호 서식)
 - * 다만, 5.31~6.30일 사이에는 금융재산이 제외된 결과임을 반드시 설명하고,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산조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안내
 -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내하지 아니하고, 최종 결정 후 결과를 통지함

(4) 제4단계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받음

- 제출받은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맞는지 확인 (제 8편 참조)
-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인 확인 실시
- 제출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다시 연락하여 추가 제출 요청
- 장애등급 구비서류 제출 요청 후 미제출시,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제출을 각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 요청하고,
 - 이 경우에도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미제출시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신청 각하
 - * 별지 제21호 서식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교부하여 안내
 - 제출 요청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 신청 각하 담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5) 제5단계 : 국민연금공단(관할 지사)에 장애등급 심사 요청

-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6) 제6단계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결과 통지, 통지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 최종 결정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최종 결정
- 장애등급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 통지
-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7.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 제 8편.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참조

8. 장애등급 심사 기준, 방법, 절차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애등급 심사 규정’ 적용

9. 유의 사항

가. 구비 서류 제출 안내 철저

- 신청·접수 또는 통지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충분히 설명하고 교부하여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사전에 문의

나. 장애등급 심사 지연시 소급 지급됨을 안내

- 장애등급 심사 지연시에도 신청일이 속한 월로 소급 지급됨을 안내하여 민원 소지 최대한 완화

VI 선정 및 지급

1. 선정 요건

- (연령) 만 18세 이상,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
 - * 3급 중복 : 3급 장애 외에 다른 장애 유형이 하나 이상 중복된 자. 다만, 중복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등급이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2010년도 선정기준액(잠정) : 단독 50만원, 부부 80만원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부부 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선정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50만원	50만원	1억2천만원	80만원	80만원	1억9천2백만원

- *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어야 함은 아님
- * 소득만 있는 경우와 재산만 있는 경우의 값은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의 값임

- 부가급여 대상자 기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부가급여 자산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도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부가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2. 조사 결과 확정 · 사업과 통보

가. 자산 조사 결과 확정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조사담당자가 조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로 통보
 - * 7.1일 이전 사전 신청기간동안에 신청한 자의 경우 금융재산조회결과까지 반영하여 통보
- 금융재산조회결과 미회신시 처리기한 연장

나. 장애등급 심사 결과 확정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 및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통보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장애등급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

3.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사업과)

- 시군구 사업과 담당자 : 자산조사 결과 및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최종 결정(결재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자와 수급자에게 통지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60일
 -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일부터 제출일까지는 서류 접수 보완기간으로 하여 처리기한으로 미산입

4. 장애인연금 지급

가.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신청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의 구비서류(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는 제외함)를 모두 제출한 날

나.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2010년 7월부터 지급

다. 지급일

- 2010년 7월은 30일 지급
- 2010년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라. 지급일의 조정 :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으로 장애 등급 하락시

- 경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하향 조정시 : 장애등급 심사결과 통지일이 속한 월까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사 후 경증장애수당 지급

마. 지급 방법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후 금융 결제원(또는 시·도 금고)에 입금 의뢰

바. 지급 계좌

- (1) 원칙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
- (2) 예외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예외 사유
 - ① 한정재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③ 치매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 대리 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제출 서류
 - 장애인연금 대리 수령 신청서
 - 대리수령인이 신청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통
 - 한정재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한정재산 또는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 입소자

- ▶ 치매
 - 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확인서
 - ②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 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 ② 정신의료기관 입소자 : 입원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VII 이의 신청

1.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18조 및 장애등급 심사규정 제9조
- (이의신청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 (이의신청기한) 장애등급 결정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 (심사의뢰) 이의신청 접수 직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 의뢰
- (이의신청결과) 이의신청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서류 보완 기간은 제외)
- (통지 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 이의신청결과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장애등급이 소급하여 상향됨
-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2.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18조
- (이의신청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이의신청기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이의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 (이의신청결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 (60일 이내 연장 가능)
- (통지 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VIII 미지급 장애인연금

1. 미지급 장애인연금 :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2. 해당 사유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 절차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

3. 청구권자 :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순위 :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부모(3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4순위), 조부모(5순위)
 - 동순위의 청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되, 대표자 선임시 대표자에게 지급 가능
- 생계를 같이한 자의 범위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 * 계좌로 입금한 경우 우선 인정하되, 현금 지급 주장시 확인서 징구
- 무연고 독거장애인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4. 청구권의 행사 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후 소멸

5. 청구절차

- 청구인 : 청구권자
- 청구 접수 기관 :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청구시 구비서류
 -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15호 서식)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청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청구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6. 결정·통지

- 통지 방법 : 서면 (별지 제16호 서식)
- 통지 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통지 기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7. 지급대상 및 방법

- 청구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
- 입금일 : 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입금

제 6 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 I. 사후관리
- II. 부당이득환수
- III. 부정수급자 관리

I 사후 관리

1. 사후관리 일반

가. 기본 원칙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

나. 확인대상

- 인적사항 변경 : 사망, 혼인, 이혼, 연령 변경, 가구 구성
-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변경
- 수급자 주민등록지 변경
- 수급자 장애등급 변경
- 보장시설 입·퇴소
- 급여 지급계좌 변경

다. 확인방법

- 본인 신고 : 급여 변경 신청, 장애인연금수급권 소멸신고
- 공적자료 조회 : 「행복e음」
- 확인 조사 :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자체 확인조사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가. 본인신고

(1) 신고사항

- 인적사항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금고이상의 형 집행에 따른 수용, 해외체류
- 소득·재산 사항 : 취업 및 실업,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 각종 재산 매매
- 지급 계좌 변경

(2) 신고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
- 신고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신고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서
 - * 배우자의 신고시에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제출받아야 함
 - * 사망에 따른 수급권상실 신고 시 위임장 불필요

(3) 처리방법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적용(행정행위 필요)
 - 급여는 그 달까지 지급, 다음 달부터 변경(중지, 감액, 증액)
- 사망의 경우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는 급여 지급
 - * 사망신고가 늦어, 사망한 달 이후에 지급된 장애인연금은 환수
- 지급계좌 변경 : 신고일이 속한 달에 변경하여 지급

(4) 처리결과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 명시

나. 공적자료 갱신에 따른 사후관리

- 인적사항의 변동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소득재산사항 : 「행복e음」 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변동사항이 통보된 달)에 적용

다. 변동 유형별 처리 방법

(1) 인적사항 변경

- 변경사유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정
-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변동 전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그 다음달부터 변동 된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 처리절차

① 결혼·이혼(사실혼 포함)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후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의 적정성 확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액 변경·중지·상실 처리 후 결정 및 통지

②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해 18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수급권 상실처리
- 65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초급여 중지, 부가급여액(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변경 지급
- 정정 전 급여 지급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③ 주소지 변경(별도의 본인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처리됨)

- 전입 시 주택구입, 전월세계약 변동, 공제금액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반드시 소득·재산 확인 후 기초급여 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급여액 변경 처리

구 분	전 출	전 입
수급자 모두	- 전출처리 - 관련서류 원본 우편송부	- 관련서류 확인 및 전월세계약서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처리
수급자 일부		

④ 나이 증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액을 변경
-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에 따라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에 해당자로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 받아 자격 결정 실시

3. 수급권 소멸

○ 수급권소멸 사유

-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경증장애인으로의 장애등급 변경, 선정 기준액 초과

○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

○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는 변동 전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 처리절차

① 사망

구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단독가구의 장애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소멸 결정 및 통지
부부수급 중 1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수급 기초급여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소멸처리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수급권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중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배우자 사망일	· 급여 변경신고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부부수급자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소멸처리 후에는 소득·재산(금융, 기타, 증여)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일반재산(금융제외)만 수급자 재산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변경 신고는 불필요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은 미등기 상속재산 처리 지침 적용

②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구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단독장애인 또는 부부장애인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일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수급 중 1인	상동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소멸처리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또는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중 1인 수급자의 배우자	배우자 주민등록 말소일	· 급여 변경신고 → 말소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③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소득·재산 변동)

- 초과사유 : 취업·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 등
- 적용시점 :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변동자료 제공) 「행복e음」 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에 적용
-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까지는 종전 자격에 따라 급여 지급
- 처리절차
 - 본인 신고 또는 변동자료 제공에 의해 변동내용 확인
 -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장애인연금 변경·정지·소멸 결정 및 통지

4. 지급 중지

- 재소자, 해외체류 180일 이상인자,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중 과다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부부수급자로서 일방의 배우자가 지급 정지(일시정지) 해당자인 경우 지급 정지(일시정지) 기간 동안은 부부 중 1인 수금액 지급
- 장애인연금 지급(일시)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유 소멸한 다음 달부터 반드시 급여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 지급정지 사유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재소자)

○ 정지기간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 지급기준

- 사유가 발생한 ‘형 확정일’이 속한 달까지는 급여 지급

○ 처리절차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또는 수형(출소)증명서*를 발급 받아 ‘형 확정일’ 확인

* 수형증명서상 형의 종류가 ‘금고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형 확정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출소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 사유 소멸일인 ‘출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연금지급 결정

5. 일시정지

- 일시정지 사유
 -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일시정지 기간
 -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18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실종신고 재판확정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실종신고 취소 확정일이 속하는 달까지
 - 행방불명 신고자 : 실종 신고 후 1개월 경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발견(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 처리절차
 - ①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자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 필요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열람(발급) 후 사실 확인

*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참고 | 해외체류 180일 이상자 처리 적용예시

- 2010년 7월 5일 장애인연금 신청 후 8월 5일 해당 결정(90,000원)
- 2011년 1월 1일 출국 후 2011년 8월 5일 해외출국자 통보
 - ⇒ 장애인연금 지급 일시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2011년 7월 지급액)
- * 해외체류 중 장애인연금 신청 후 해당자로 결정된 수급자의 해외출국 180일 기산일은 해외출국일이 아닌 장애인연금 신청일임에 유의
- * 다만, 2010년 6월 30일 이전 출국자의 출국일자 기산일은 2010년 7월 1일로 봄

② 실종 또는 행방불명

- 본인 신고 또는 관할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실종 등 행방불명자 확인
-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
 - * (법원)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실종·부재 선고취소 신고증
(경찰서) 신고접수증, 실종아동 등 가출인 수배부, 182경찰정보통신망 수정·해제자료 등
- 실종장애인을 찾기 위한 경찰청 실종아동등찾기센터(<http://www.182.go.kr/index>)를 보조적으로 활용
- 주민등록말소(법원에 의해 실종선고, 부양의무자 주민등록말소 신고)는 「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 변동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 기관에 별도 확인 요청 없이 처리 가능

6. 급여관리에 대한 중점 조사 사항

(1) 대상 : 「행복e음」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기 확인이 필요하거나, 부정수급 또는 유용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수급자

- ▶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입금받는 수급자
- ▶ 의사무능력자인 수급자
-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서는 1인 가구인 자와 보장시설 입소자
-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이 타인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철저 관리

(2) 조사수행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분야·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군·구별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3) 조사사항

- 장애인연금이 수급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 중증장애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Ⅱ 부당이득 환수

1. 개요

가. 부당이득의 범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나 잘못 지급 된 경우

나. 확인 및 결정기관 :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다. 부당이득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사유발생일 확인
- 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정지(일시정지) 또는 급여액 변경
- 환수 결정처리

2. 부당이득 환수 결정 기준

가. 환수대상자

- 수급권이 없음에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자
 - 사망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선정기준액 초과자, 경증장애인으로의 장애 등급 변경자, 해외체류 180일 이상자, 재소자, 실종자 또는 행방불명자

- 수급권이 있어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 전·출입지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중복 지급한 자
 - 단독수급에서 부부수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과다 지급한 자
 - 그 밖에 담당자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자

나. 결정 시점

- 본인신고 : 변경신고일
- 공적자료 갱신 : 변동자료 수신일
- 확인조사 : 확인 조사된 일

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산정

- 지급한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가산
 - 이자의 계산 기간(개월 수)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환수금액을 납부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국민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이 매년 1월에 결정) : 2010.1.1~2010.12.31까지는 연 3.3%
 - 환수금액 총액의 1천원 미만의 단수는 제외
- 상계 처리 가능하며, 타 배우자의 급여액에서도 상계 가능

▶ 예시 1. 환수금액 산정

- 중증장애인부부(甲, 乙)의 부당이득금 지급 기간 : 2010년 7월 ~ 10월(3개월)
- 총 지급액 : 436,800원(145,600원 × 3개월), 각각 218,400원
- 중증장애인부부에게 각각 환수해야 할 금액은?
→ 2010년 7월 ~ 10월까지 각각 지급한 장애인연금액 218,400원 중 218,000원 환수

▶ 예시 2. 이자액 산정

- 중증장애인 丙의 부당이득금 지급 기간 : 2010년 7월 ~ 10월(3개월)
- 총 지급액 및 납부 월 : 453,000원(151,000원 × 3개월) / 12월 납부예정
- 이자율 : 연 3.3%(2010.1.1~2010.12.31)
- 이자 계산 기간 : 7~11월, 5개월
- 중증장애인 갑(甲)에게 각각 환수해야 할 이자액은?
→ 453,000원 x 연 3.3% x 5개월 = 74,745원 중 74,000원

3. 징수절차

- 환수 결정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요청
 - *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부당이득환수 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한 사전처분 통지서 통보
- 환수 결정 및 납부 통지
 - 납부일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한을 설정
 - 서면으로 통지 :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 신청 방법 등 명시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의 납부의무자 : 지급된 연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
 - * 다만,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 분할납부 : 환수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조치 가능
- 독촉
 - 납기일 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체납처분 절차 : 독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처분 등 진행

4. 징수금액의 처리

- 당해연도 장애인연금분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여입
- 과년도 장애인연금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5. 결손처분

- 결손처분 대상 : 부당이득 중 장기체납 부당이득금
- 결손처분 기준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지급되지 않아야 할 장애인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당이득금 :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전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채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환수대상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고,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자를 변경하여 상속인에게 납부 통지해야 함에 유의
- 결손처분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 심사 후 7일 이내에 「행복e음」에 심사결과를 입력·관리
- 소멸시효 : 5년
 -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장애인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

Ⅲ 부정수급자 관리

1. 과태료부과

가. 위반행위 확인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
- 수급권 소멸사유 미신고

나. 과태료 부과 결정

- 위반행위별 과태료 징수금액 결정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진술 	2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10만원 이하

- 사전 통지 :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과태료부과 원인 및 내용,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 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전 통지서 통보
- 과태료 부과 :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 정하여 부과
-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2. 벌 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또는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누설 또는 신용·보험 정보를 누설할 경우 행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부과

제 7 편

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안내



- Ⅰ. 경증장애수당
- Ⅱ. 장애아동수당
- Ⅲ. 지급일

◇ 장애인연금 도입 후,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존치함

I 경증장애수당

가.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등록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2010년 5월 31일부터는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 가능
- 장애등급 : 3~6급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1)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없음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최저생계비의 120%	605,12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5	2,240,922

※ 차상위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다.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3만원
- 2010.6월까지 종전 보장시설 장애수당(월 2만원)을 지급받는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보장시설 퇴소시 중단)
- * 신규로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라.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으로 등급 변경시

- 경증장애수당 수급자가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을 받아 자산조사 후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 * 중증장애인으로 등급이 결정된 때부터 경증장애수당 지급을 중지

Ⅱ 장애아동수당

가. 대상자

-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2010년 5월 31일부터는 등록된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
 - * 2007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함
- 장애등급 : 1~6급
 -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 3급 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 유형 이외에 다른 장애 유형이 하나 이상인 자(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 3~6급
 -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1)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최저생계비의 120%	605,12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5	2,240,922

* 차상위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다. 지급액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 2010.6월까지 종전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아동(월 7만원), 경증장애아동(월 2만원)은 해당 금액 계속 지급 (보장시설 퇴소시 중단)

* 신규로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라. 연령 변경시

- ◇ 만 18세가 되는 경우(만 18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로 판단)
- ◇ 18~20세인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만 21세가 되는 경우

-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하되, 장애등급 심사는 실시
 - 차상위계층일 경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장애인연금제도의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실시하여 결정
 - 해당 사유 발생 3개월 전에 대상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토록 반드시 안내
- 경증장애인인 경우 : 경증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
 - 만 18세가 되는 월의 다음 월부터 전환

마. 18~20세의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

-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중지
-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경증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

Ⅲ 지급일

① 지급 개시일

- 지급일 : 매월 20일
 - 2010년 7월에도 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은 20일 지급
- 지급 개시일 : 신청일
 - 신청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달의 급여액 전액 지급
 - * 종전 장애수당과 다름에 유의(종전은 15일 이전이면 전액, 15일 이후이면 50% 지급하였음)

② 지급 변경일

- 기본원칙
 - 자격 변경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변경 전의 자격에 해당하는 지급액의 전액을 지급
 - 그 다음 월부터는 변경된 자격에 해당하는 지급액 지급하거나 중지
 - * 자격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를 구분하여 전액(15일 이전)과 50%(15일 이후)를 지급하던 종전과는 다름에 유의
- 장애유형별 재판정 대상자의 장애등급 재판정 및 (신청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 신청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 장애등급 심사결과 통지일이 속한 달까지는 종전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지급
 - 그 다음 월부터 변경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액 지급

제 8 편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 I. 지체장애
- II. 뇌병변장애
- III. 시각장애
- IV. 청각장애
- V. 언어장애
- VI. 지적장애
- VII. 정신장애
- VIII. 자폐성장애
- IX. 신장장애
- X. 심장장애
- XI. 호흡기장애
- XII. 간장애
- XIII. 안면장애
- XIV. 장루·요루장애
- XV. 간질장애

지체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진단서	절단부위 및 장애등급 기재
	검사자료	절단 부위 확인이 가능한 X-ray 사진
관절 장애	장애진단서	마비·강직 정도,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소견과 장애등급 기재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X-ray 사진 등 (의사의 판단에 의거 필요시 근전도 검사)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상지 /하지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근력등급, 마비정도 및 장애등급 기재 ※ 척수 병변은 그로 인한 상지/하지 기능장애로 장애등급을 판정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공통: 도수근력검사, 말초신경손상 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CT, MRI 등 신경 손상 확인용 영상자료 (의사의 판단에 의거 필요시 X-ray 사진, 근전도 검사 등 추가)
	진료기록지	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최근 기록지가 중요함
척추 고정술	장애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 및 장애등급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사진
강직성 척추염	장애진단서	강직된 척추부위 및 강직정도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 (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용)
	진료기록지	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최근 기록지가 중요함
변형 장애	장애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만곡 정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및 장애등급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등 영상의학검사

<장애심사서류 완화>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절단장애는 2년이 경과한 장애진단서도 활용 가능)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 (CT, MRI, X-Ray, 도수근력 또는 근전도 검사 등) 활용
 - 기존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위 검사자료를 낼 수 없으며, 전문적 진단과 사진자료만으로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CT, MRI 대신 일반사진 자료를 제출 가능. 다만,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CT, MRI를 촬영
-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명시한 경우는** 진료기록지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함. 이 경우 장애상태를 확인할 일반사진 자료 등 제출 가능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뇌병변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및 장애등급을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MRI(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한 것이며, 발병 당시와 현재의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중요)
뇌성마비	장애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지수 및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구체적인 발달 지연 정도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검사결과지	이미 촬영해놓은 MRI 등 뇌 사진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뇌 사진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파킨슨병	장애진단서	최근 6개월 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물용종류·기간, 약 복용 전 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 (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장애 정도 등 확인용)
<p><장애심사서류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별도 제출 필요)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CT, MRI 등)를 활용 - 기존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위 검사자료를 낼 수 없으며, 전문적 진단과 사진자료만으로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CT, MRI 대신 일반사진 자료를 제출 가능. 다만,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CT, MRI를 촬영 진료기록지 : 파킨슨병 외에는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 대신 근위축 등이 심한 정도를 확인할 사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파킨슨병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시력 장애	장애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 및 장애등급을 기재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막이나 수정체가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 칼라 안저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 필요 ※ 시신경 병증에 의한 경우 등 검사결과지 상의 눈의 상태와 최대교정시력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필요 - 시유발검사 결과지를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측정치와 전안부사진 또는 칼라 안저사진에 나타난 각막 또는 시신경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면 시유발검사결과지를 보완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시야 장애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된 시야제한 정도 및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 망막색소상피변성, 녹내장, 시신경 위축 등이 시야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임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p><장애심사서류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를 활용(시력검사 결과지, 전안부사진, 안저사진, 시야검사 결과지 등) ▪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청력 장애	장애진단서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장애등급을 기재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음 청력 검사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장애진단서 상의 장애등급이 2~3급인 경우 뇌간 유발반응 검사 (장애등급 심사 대상인 경우 4~6급이어도 뇌간 유발반응 검사 필요)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 이명도 검사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 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평형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및 장애등급을 기재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 의자 검사 등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 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청각 장애 진단서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력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함(2~7일의 검사 주기로 3회 시행한 청력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 2,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함 	
<p><장애심사서류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를 활용 (순음청력검사결과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등) ○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언어장애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정도(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및 장애 등급을 기재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 장애 : 그림자음 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검사 - 아동 다음 중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어휘력검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장애심사서류 완화>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지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 가능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
-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 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지적 장애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장애등급을 기재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웍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진료기록지	상병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6개월간의 의사 기록지 등을 제출하며, 선천적 장애 등으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지적 장애 진단시 Tip	✧ 지적장애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음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 후 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진단함 ※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 진단 대상이 아님	
<p><장애심사서류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지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 가능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 ○ 진료기록지 :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정신 장애	장애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치료내용,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GAS척도 점수,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에 대한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진료기록지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원인 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로 제출하되, 최근 3개월간 경과기록지를 충실히 제출 - 필요시 간호기록지나 투약기록지 보완
정신 장애 진단서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절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된 경우에 진단함 (3개월 이상 투약 등이 중단된 경우는 장애등급 판정이 보류됨) ✧ 국제질병분류표(ICD-10)의 진단명이 <u>F20 정신분열병</u>, <u>F25 분열형 정동장애</u>, <u>F31 양극성 정동장애</u>, <u>F33 반복성 우울장애</u>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함 ✧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해 최근 3개월 중에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u>평균적 상태</u>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함
<p><장애심사서류 완화></p> <p>○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p> <p>※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p>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폐성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자폐성 장애	장애진단서	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점수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검사결과지	웍슬러지능검사, 필요시 자폐성척도(K-CARS검사 등)
	진료기록지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치료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등 확인)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자폐성 장애 진단서 Tip	국제질병분류표(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함	
<p><장애심사서류 완화></p> <p>○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p> <p>○ 검사결과지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 가능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p> <p>○ 진료기록지 :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보존기한 경과,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의 사유로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p>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신장장애	장애진단서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임과 '최초투석일' 및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또는 '신장이식을 받은 자'인지를 기재
	진료기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석중인 자는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총 3개월 기록을, 신장을 이식한 자는 이식 수술 기록지를 제출 ✧ 장애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임과 '최초투석일'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가 명확히 기재 되면 진료기록지를 내지 않아도 됨
신장장애 진단서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명과 3개월 이상 투석치료 또는 이식여부 확인 필요 ✧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2급이며, 매 2년마다 재판정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장애등급이 5급이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함.
<p><장애심사서류 완화></p> <p>○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p>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심장 장애	장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및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첨부하되,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진단명, 심장질환 증상 중증도,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퇴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운동부하검사결과지, 심초음파검사 결과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흉부 X-RAY사진, 심전도 검사결과지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 ✧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수술기록지
성인 심장 장애 진단서 Tip		<p>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하며, 총 취득점수가 20점 이상일 때 1~3급,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5급</p> <p>(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 증상 중증도 : 5점 만점 -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 증상 중증도를 기준으로 한다.</p> <p>(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주) ㉠ 심실구혈율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인 경우에 한하여 좌심실 구혈율의 정도를 증상에 따른 중증도 점수로 판정할 수 있다.</p> <p>(다) 검사소견(흉부 X선, 심전도)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p> <p>(마) 입원(심부전, 심근허혈)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p> <p>(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6개월 이내)</p> <p>주) (좌)심실구혈율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p> <p>①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심실중격 결손증, 심방중격 결손증 등을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해 발생한 폐동맥고혈압으로 아이젠멩거씨 증후군으로 진행된 경우</p> <p>②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했거나 완전교정이 불가능한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p> <p>③ 만성교압성 심낭염인 경우</p>
소아 청소년 심장 장애 진단서 Tip		<p>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하며, 총 취득점수가 20점 이상일 때 1~3급,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5급</p> <p>(가) 심장질환 증상 중증도 : 5점 만점</p> <p>(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심실구혈율 : 5점 만점(주) - 좌심실이 없는 경우 우심실 또는 단심실의 구혈률을 적용한다. ㉠ 심실구혈율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인 경우에 한하여 심실 구혈율의 정도를 증상에 따른 중증도 점수로 판정할 수 있다.</p> <p>(다) 검사소견(흉부 X선, 심전도, 청색증)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p> <p>(마) 입원(심부전, 선천성심질환 합병증)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p> <p>(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6개월 이내)</p>
<p><장애심사서류 완하></p> <p>○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p>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호흡기 장애	장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악화시가 아닌) 정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 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	<p>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악화시가 아닌) 정상시의 호흡곤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 (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등급 인정) ※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검사결과가 있고, 그 검사만으로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 가지의 검사결과 제출 생략 가능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수술기록지
호흡기 장애 진단시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검사소견,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후 진단함 ◇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함 ◇ 동맥혈 가스검사는 정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시에 검사를 시행함 ◇ 폐기능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여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함. 기관지 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함.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폐기능검사는 기관지 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인 경우(예를 들어 기관지 확장제로 FEV1 이 12%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후 다시 평가함 ◇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에도 기관지 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이면서 폐기능이 호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판정을 할 수 있음
<p><장애심사서류 완화></p> <p>○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p>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간장애	장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점수,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p>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록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 기록지
간장애 진단시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검사소견,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후 진단 ◇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 ◇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
<p><장애심사서류 완화></p> <p>○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p>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면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안면 장애	장애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및 장애등급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 기록지
안면 장애 진단시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된 안면의 60%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면상반흔 · 색소침착 · 모발결손 · 조직의 비후나 함몰 · 결손이 있는 경우 또는 코 형태의 2/3이상이 경우에 대해 장애등급 인정 * '비후나 함몰'이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하며,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센티미터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는 병변 부위 면적을 계산할 때 75%로 계산함 ◇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노출된 안면 부위의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에 국한 	
<p><장애심사서류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진료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루 · 요루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장루 · 요루 장애	장애진단서	장루 · 요루의 종류와 장루 또는 그 주변 피부의 현저한 변형(함몰·협착·탈출·장피 누공·피부 혈음)의 유무 및 정도, 요루 유무, 배뇨장애 유무 및 정도를 기재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복원수술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진료기록지	장루종류, 요루유무, 함몰, 협착, 피부 혈은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장루 · 요루 장애 진단서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임 ◇ ‘혈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임 ◇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 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함 	
<p><장애심사서류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을 위한 당일 진료기록지를 내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부위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음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질장애 등급심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간질장애	장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작의 종류와 발작시 유발되는 증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타인의 보호 관리 필요정도, 적극적인 치료내용(약물처방내역, 순응도, 약물혈중농도), 발생 빈도(월 *회, 월 *회의 발적이 연 *개월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p><간질장애 소견서 첨부></p>
	진료기록지	<p>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중 장애원인(진단명) · 적극적 치료여부 · 발작의 형태 및 평균 발작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주요경과 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초진기록지</p> <p>- 필요시 간호기록지나 투약기록지 보완</p>
간질장애 진단시 Tip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함 항간질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함
	소아청소년 (만18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질성 뇌병증에 속하는 질환(영어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은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진단함 간질성 뇌병증에 속하지 않는 질환은 최초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진단함 항간질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함
<p><장애심사서류 완화></p> <p>○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성인은 2년 이내, 소아청소년은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다만, 성인의 경우 장애진단서에 2년 이상 치료했는지 여부 기재 필요</p>		

※ 장애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9 편

서 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 차상위) ⑥기타 ()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지원(□-사랑카드) <input type="checkbox"/>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보호비 <input type="checkbox"/>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아동양육비 <input type="checkbox"/> 학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경증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학비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이가족 양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시간병방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재활치료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도우미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생계지원 <input type="checkbox"/> 의료·재활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주거지원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 <input type="checkbox"/> 상담·후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입소 <input type="checkbox"/> 타법 의료급여 ⁵⁾ () <input type="checkbox"/> 정부양곡(kg)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 면제 (고객번호 :)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할인 (고객번호 :)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요금 할인 (통신사 :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T <input type="checkbox"/> LGT)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⁶⁾
						※대표계좌기재
동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동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 ⁷⁾)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안내 및 유의사항

1. 사업별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장애인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 서비스 20일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 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변·,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급이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어 사실상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 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8.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작성방법〉

신청서는 신청인의 작성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을 통하여 파악된 인적정보 및 소득, 재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산 출력됨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신청구분 :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 신청을 '신규, 변경, 연장'으로 구분하여 체크

- ① 변경신청 : 수급자 또는 보장가구의 인적사항, 가구구성, 소득재산변동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현금급여 신청사항 등의 변경신청의 경우
 - ② 연장신청 : 아동·청소년 보장의 청소년특별지원의 연장신청의 경우
-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서비스기간 종료 후 재신청은 신규신청에 해당

○ 가족사항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구원을 모두 기재하되(비보장가구원 포함), 주민등록상 없어도 보장가구에 속하는 가구원도 기재
- ※ 사업별 보장가구 범위 및 확정 절차는 지침 제3편 II. 보장가구의 결정 참고

- ① 동거여부 : 가구원별 동거여부를 표시하고 미동거 시 사유를 기재
- ② 학 력 : 미취학, 무학, 고졸, 대졸 등 학력기재(중퇴포함), 재학 중인 경우 학교명·학년·반을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 ③ 건강상태 : 건강, 장애, 질병, 장애+질병으로 구분 기재
- ※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을 기재하고 질병이 있는 경우 병명을 기재
- ④ 취업상태 : 사무원,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구체적인 직업 기재
- ⑤ 배우자 관계 : 보호를 요하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체크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범위에 속하는 자에 대해 가구단위로 기재

- (기초생활보장 신청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시) 아동의 1촌의 직계혈족

- ① 수급(권)자와의 관계
- 보장가구 가구구성원과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세대주를 중심으로 기재(딸, 아들)
- '미혼자녀'를 보장가구원으로 보아 가족사항에 기재할지 또는 부양의무자로 보아 부양의무자란에 기재할 지 주의하여 작성

- ② 가구원수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 기재(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미만의 미혼자녀 및 30세 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대학생포함)인 자녀)
 -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관계가 없으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 ③ 월평균 지원금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금액 기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체크

- ①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자활급여 신청 시, 별도 체크란에 표시
- ② 영유아복지 :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구분하여 체크하며, 보육료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별도 작성
- ③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시,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중 체크
- ④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신청 시 배우자동시신청 여부를 별도 체크
- 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신청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별도 작성
- ⑥ 기타 :
 - '생계지원, 의료·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후원서비스, 시설이용·입소'의 경우 신청자가 상기의 보장 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지자체 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내 제공기관 등의 자원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 ※ 추가지원 요청이 아닌 단순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도 신청서가 존재하는 경우 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예) 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복지대상자가 시설이용·입소 신청할 경우(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만 작성)
 - '타법의료급여'의 신청의 경우 해당란에 체크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1항제2호부터 제9호 중 해당하는 법령명을 기재
 - '정부양곡' 신청시 해당란에 체크하고 신청하는 kg양을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대행)

- 감면을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에 체크

※ 해당 신청은 대행서비스로써 TV 수신료 면제 및 전기요금 신청의 경우 신청정보가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며, 전화요금 할인 신청은 KT 전화에 한하며 해당신청정보를 KT에 제공

○ 신청일 및 신청인 서명

- 필수구비서류 최종 제출일을 신청일로 기재하여 서명

201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 급여계좌번호
 - 대상자별로 가능한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기재
 - 반드시 실명계좌 등록해야만 급여지급 가능
- 통지방법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 중 하나만 택일하게 하며, 선택하지 않을 시는 서면통지를 원칙
- 유의사항 및 고지
 -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읽어보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담당자가 소리내어 읽어준 후 서명할 수 있도록 함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원 ()	원 ()	원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지원금등)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용도(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원) □상가보증금(원) □기타(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마리, 원) □돼지(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가축(마리, 원) □종묘(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기구류(원) □기타(원)	회원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공사채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 ³⁾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할보조금 (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별지 제1호의3서식]

[앞면]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		
		-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p> <p>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p> <p>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p> <p>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p> <p>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p> <p>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p> <p>8)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p> <p>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p> <p>10)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p> <p>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p> <p>1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p> <p>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p> <p>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p>
<금융정보등의 범위>
<p>1. 금융정보</p> <p>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p> <p>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p> <p>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p> <p>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p> <p>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p> <p>2. 신용정보</p> <p>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p> <p>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p> <p>3. 보험정보</p> <p>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p> <p>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p>
<유의 사항>
<p>○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8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p> <p>○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및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장애인연금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input type="checkbox"/> 결정 <input type="checkbox"/>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 /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조사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신청결과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 내 및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지급예정 연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입금금액계좌번호</td> <td>본인</td> </tr> <tr> <td></td> <td>배우자</td> </tr> </tbody> </table>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7월은 3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 되고, 과태료 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조사 심 의 결 과	□ 적 합	□ 아동·청소년	<p><input type="checkbox"/> 특별지원청소년</p> <p>1. 귀하는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rowspan="2" style="width: 10%;">보호자</td> <td style="width: 30%;">이름</td> <td style="width: 10%;">관계</td> <td style="width: 10%;">생년월일</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주소</td> <td></td> <td>연락처</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0%;">지원기관</td> <td>기관명</td> <td></td> <td>대표자</td> <td></td> </tr> <tr> <td>주소</td> <td></td> <td>담당자</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연락처</td> <td></td> </tr> <tr> <td colspan="5">지원내용</td> </tr> </table> <p>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보호비/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기타</p> <p>1. 귀하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보호자	이름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보호자	이름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 노 인 복 지	<p><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p> <p>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급예정 연금액</td> <td></td> </tr> <tr> <td style="width: 30%;">입금금액계좌 번호</td> <td style="width: 30%;">본인</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td> <td>배우자</td> <td></td> </tr> </table> <p>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 : 연금지금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p>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계좌 번호	본인			배우자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계좌 번호	본인																														
	배우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조사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본인 부담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공 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안내문 참조</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납부계좌 :</td> </tr> </table>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후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금액	원	제공 기관	※이용안내문 참조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본인 부담금	금액	원	제공 기관	※이용안내문 참조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사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안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정지·중지·상실													
<input type="checkbox"/> 변경	일사유	자	년 월 일 부터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정지	일사유	자	년 월 일 부터										
			용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1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전화 번호				
접수 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보장 신청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한 서류를 표기함.													
구 분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간병상태 (장애, 질병)	근로능력 유무·사유	학력·제학 여부 (학평·학한)	자격증 (경력)	복지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직업현 구분	직업 지종	취 업 태	퇴 업 태	보장상태
	의	의									직장명	전해번호	의료보장	
가구원	의												보장결정	
	의													
	의													
	의													
	의													
	의													
부양 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가구 원수	기 구	직 업	소 득	재산	제 신 의 소 속 환 산	소 속 인 정 액	월 평균 지 원 금	부양능력 판 정
	의													사 유
	의													
조 사 결 과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 성명)		<input type="checkbox"/> 군복무 ()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 () <input type="checkbox"/> 부역 ()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가출·실종 () <input type="checkbox"/> 부양기피·거부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부양능력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명	사업소				재산소				기타소				추정소
	근로소	임업소	어업소	기타사업소	임대소	이전소	연금소	공직이전	시적이전	부양비			
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특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특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갑-1)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년도분기		주 소 변 동 사 항						세 대 주			
세 대 주 및 주 소 변 동 사 항		세 대 주 변 동 사 항		주 소 변 동 사 항		주 소 변 동 사 항		세 대 주			
세 대 주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입 일 자					
주 소 변 동 사 항											
가구원 사항											
구 분	세 대 주 의 관 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기 구 원 별 보 장 구 분	기 구 원 별 지 원 금 여	복 지 금 여 계 좌 (금융기관명)	개 인 별 소 득	소 득 합 계	자 산	재 산	
보 장 가 구	본 인							전 기 구 원 소 득 액	간 축 물 토 지	장 기 저 축 생 활 준 비 금 경 로 연 금 부 채 (저 소 득 노 인)	재 산 총 액
								소 득 공 제 액	어 업 권 입 목 재 산 지 동 차 산 박 행 양 기	공 제	공 제 총 액
								전 기 구 원 소 득 액	임 차 보 장 금 금 용 재 산 동 산 회 원 권 등	부 채	기 초 공 제 액 인 정 부 채 액 소 득 환 산 액 소 득 공 제 액
보장구분사항											
내 용	기 초 생 활 보 장 (기 초 생 활, 자 활 지 원, 무 량 인)		영 유 아 보 육	아 동 · 청 소 년	한 부 모 가 족	장 애 인 복 지 (장 애 인 연 금)	노 인 복 지 (기 초 노 령 연 금)				
개 시 일											
중 지 일											
정 지 일											
상 실 일											
보 장 유효 형 (등 표)											
보 장 기 구 원 수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제9편 서식

(을-1)

관리번호		장애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장애인 성명	복지요구	<input type="checkbox"/> 보장구지원() <input type="checkbox"/> 학비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취업알선)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직업알선) <input type="checkbox"/> 자급대여) <input type="checkbox"/> 시설임소)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 애 유 형	장애부위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 등록 사항	구분	주된장애		중복장애		주된장애		중복장애		주된장애		중복장애		주된장애		중복장애					
	최초 등록 등급																				
	등록 조정																				
	주된 장애	선천성() 후천성() 장애발생연령()		중복장애		선천성() 후천성() 장애발생연령()															
장애 사유	보 장 구	종류() 교부일자()		특수교육		기관명() 기간()		기관명() 기간()		기관명() 기간()		기관명() 기간()		기관명() 기간()		기관명() 기간()					
	취 업 알 선	직종() 기관() 일자()		직업훈련		직종() 기관명() 기간()		직종() 기관명() 기간()		직종() 기관명() 기간()		직종() 기관명() 기간()		직종() 기관명() 기간()		직종() 기관명() 기간()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학 비		성명() 학교명 및 학년(반)		성명() 학교명 및 학년(반)		성명() 학교명 및 학년(반)		성명() 학교명 및 학년(반)		성명() 학교명 및 학년(반)		성명() 학교명 및 학년(반)					
	장애이동수당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의 료 비		의 료 비		의 료 비		의 료 비		의 료 비		의 료 비		의 료 비					
구 원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시설임소(이용)	대상자() 시설명() 소재지()		시설이용일자()		시설이용일자()		시설이용일자()		시설이용일자()		시설이용일자()		시설이용일자()		시설이용일자()					
자동차 지 표	발급일	보증상 장애유무		소유자		반납일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표지 발급		발급일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일자	
	지 표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2)

관리번호					세대주	
장애인연금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급개시일	지급정지일 (지급정지사유)	상실일 (상실사유)	수급사항	
					해당구분	지급액구분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기초급여 <input type="checkbox"/> 전액 <input type="checkbox"/> 감액(원) <input type="checkbox"/> 부가급여 (원)	
이력	변동내역	개인현황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이의신청내역	<input type="checkbox"/> 수급결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연금액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득·재산·부채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부당이득환수 내역		
	연금액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과태료부과 내역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상실사유발생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200,000원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변동사유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input type="checkbox"/> 거짓 자료제출 <input type="checkbox"/>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제출면 서식



(병-1) (관리번호 : 세대주:)

상담내용															
1차 상담					2차 상담										
구분	성명	주요변동사항	구분	성명	주요변동사항	구분	성명	주요변동사항	구분	성명					
보장대상자			보장대상자			보장대상자			보장대상자						
부양 의무자			부양 의무자			부양 의무자			부양 의무자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재산			재산			재산			재산						
상담일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상담일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2)

상담내용									
				구분	성명	주요번호	상황		
				보장대상자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구분	성명	주요번호 <th colspan="3">상황</th>	상황		
				보장대상자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상담일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상담일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상담일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3차
상담

4차
상담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9면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소재지)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수급자·보호대상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조치의 내용			
납부(환수) 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p>「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아동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안내	<p>1.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p> <p>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1) 기초생활보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p> <p>2) 영유아보육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p> <p>3) 한부모가족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4) 장애인복지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에 신청</p> <p>5)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p> <p>6) 노인돌봄비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7)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p> <p>8)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신청</p> <p>9)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이 의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input type="checkbox"/> 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 분 의 내 용 또 는 통 지 된 사 항					
이 의 신 청 취 지 및 사 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장애인연금법」 제1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1.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지 60일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장애인연금관련 위임장				
수급자 (위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내 용	<p>「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금 신청,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수급권 소멸신고, 이의신청, 연금대리수령신청의 위임</p>			
대리인 (수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 소			
<p>위임자(본인)는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금 신청, 미지급연금 지급청구, 수급권 소멸신고, 이의신청, 연금대리수령신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위 임 자(본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위임자 본인 확인 연락처 :</p>				
<p>※ 확인자료 : 위임자(본인)와 수임자(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참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 14호서식]

(앞 쪽)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수급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사 유	<input type="checkbox"/>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월간)	
※아래 법정대리인은 수급자가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와의 관계			전 화 번 호	
	주 소			휴 대 전 화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div>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 확인서						
수급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월간) · 월까지		
대 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신 청 인 과의관계	의
	주 소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귀하 </div>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신청 </div>	신청 결과 통지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40px; margin-bottom: 1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접수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40px; margin-bottom: 1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확인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결재 </div> </div>
※ 유의사항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일정소득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보전 및 추가비용 보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하신 장애인연금의 수급 자격 해당 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심사는 장애인으로서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등급의 객관성 및 장애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직인

장애인연금 신청인(또는 대리인)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하신 장애인연금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잠정적으로 ()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재산이 제외된 것으로 귀하의 금융재산이 ()만원 이상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장애등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 ()일까지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귀하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할 경우 귀하의 장애인연금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 심사로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직인

장애인연금 신청인(또는 대리인)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장 애 등 급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심사번호		결정통지일자	
시 군 구		신 청 유 형	
결과구분		최종결정등급	
주장애유형/등급		부장애유형/등급	
장 애 등 급 결 정 내 용			
장애등급 결정내용			
중복합산 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 직인			
귀하는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년 ()월 ()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하셨으나,

장애인연금 대상자 자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 중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미 제출 서류

이에,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2회 이상 요청 (1회 : 월 일, 2회 : 월 일)하였으나,

귀하께서 제출하지 않아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자격 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직인

[별지 제23호 서식]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1. 장애인연금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주택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제공 동의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1촌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택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제공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	
		-	
		-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유 주택의 지번, 지분율, 공시가액 등의 정보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장애인연금 장애등급 심사 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0년 4월12일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일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의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장애등급 심사 실시를 위한 장애진단을 의뢰합니다.

장애인연금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장애인의 거동상 불편함 등을 감안하여 방문한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 및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직인

20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